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 가.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적금' 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나. 이 적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가입대상)

- 가.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2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불가하며 비대면 신규 시[25.1.23.이후 가입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도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를 통해 자격 검증)
- 나.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다. 이 적금은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3조(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 가.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개월 ~ 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
- 나. 이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합니다.
- 다.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4조(저축금액 및 저축방법)

- 가. 이 적금은 최소 1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적금의 금융기관 합산 저축한도는 고객별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최고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단,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 이내 까지만 저축 가능)

제5조(이율의 적용)

- 가.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나. 이 적금의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1% 이자지원금 지급)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1%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 은행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적금 만기해지
2.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이 일치. 단, 가입자가 적금의 만기일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 또는 대체복무 요원이 잔여 복무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3.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 1) 원본제출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 나. 가입자가 만기해지 시에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한 국가계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라.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7조(매칭지원금)

가.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급금액은 '22.1.1 시행일 이후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매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은 「제6조 1% 이자지원금 지급」에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 매칭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입금 희망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라.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 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병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매칭지원금의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8조(세율의 적용)

가.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9조(제한사항)

가. 이 적금은 일부 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나.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JBANK)에서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신규의 경우[25.1.23.이후 가입 가능])

다. 이 적금을 2025년 1월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1일 이전의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력은 횡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 2025년 1월 2일 이후(1월2일 포함) 가입한 신규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하다.

마.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을 2025년 1월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중도해지 이자율)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이 적금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적금의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만기 후 이자율)

예금주가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해당적금의 만기 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1. 이 제정 특약은 2018.08.29. 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제정 특약은 2019.03.11. 부터 시행합니다.
3. 이 제정 특약은 2019.04.01. 부터 시행합니다.
4. 이 제정 특약은 2019.07.01. 부터 시행합니다.
5. 이 제정 특약은 2021.10.14. 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6. 이 제정 특약은 2022.01.17.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합니다.
7. 이 제정 특약은 2023.01.01.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합니다.
8. 이 제정 특약은 2024.01.01.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합니다.
9. 이 제정 특약은 2024.06.03.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합니다.
10. 이 제정 특약은 2025.01.02.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합니다.
11. 이 제정 특약은 2025.11.25.부터 시행합니다.